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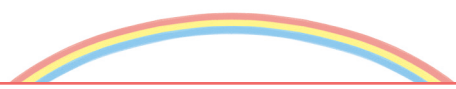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PART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I 아동학대의 발견

1. 학대와 훈육의 경계	06
2. 학대의 영향과 긍정적 양육문화의 중요성	07
3.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09
4.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11

II 아동학대의 신고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14
2. 아동학대 신고방법	16
3.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	19
4.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 보호와 지도	20

PART
2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I 영유아 권리존중의 Base-line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24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분석	25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전제	26
4. 권리존중 행동지도	28

II 보육교직원의 역할

1.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	29
2.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32
3.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가정과의 협력	36
4. 민원 및 신고 시 대응	38

PART
3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I 영유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행동

1. 영유아 성 행동과 성인의 태도	44
2. 영유아 성 행동 관련 용어의 정립	46
3. 영유아 성 행동 수준별 특성 이해	47

II 영유아의 성 행동 수준별 지도

1. 일상적인 수준의 성행동 지도	49
2.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51
3.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52

PART
4
아동
성폭력·실종
예방

I 아동 성폭력 예방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56
2. 아동 성폭력 현황	58
3.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60
4.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62

II 아동 실종 예방

1. 실종에 대한 이해	64
2. 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	66
3. 실종·유괴 예방수칙	68
4.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실종 예방 관련 정보	70



PART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는 영유아의 생존발달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I 아동학대의 발견

1. 학대와 훈육의 경계
2. 학대의 영향과 긍정적 양육문화의 중요성
3.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4.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II 아동학대의 신고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2. 아동학대 신고방법
3.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
4.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 보호와 지도

I 아동학대의 발견



1. 학대와 훈육의 경계

- 훈육(訓育)은 ‘가르칠 훈’ ‘기를 육’이라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로 사전적 의미로는 가르쳐 기른다는 뜻이다. 또한, 영어 단어 discipline을 훈육으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그리스어, 헤브라이어 등에서의 어원이 다양하며 대개는 설명하여 알게 한다는 뜻을 가진다.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부모 모두 자녀를 훈육하여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였으나 훈육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타이름이나 설명부터 꾸짖음, 체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고, 훈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이 두드러지기도 하였다.
- 많은 문화에서 아동에 대한 훈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하던 때가 있었으나 1979년 스웨덴이 가정에서의 자녀 체벌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는 많은 국가에서 부모가 자녀 훈육의 수단으로 체벌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민법 제915조가 삭제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살펴보기	QR 코드를 연결하여 민법 연혁법령에서 법률 제17503호와 법률 제 17905호의 제915조를 각각 찾아 비교해보세요
「민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 개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강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 개정] 제915조 삭제 <2021. 1. 26.>	

활동	성장기 직, 간접적인 체벌 경험에 대해 수강자들과 의견을 공유해보세요	
• 취학 전에 가정에서 내가 체벌을 받았다 • 취학 전에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체벌을 받는 것을 보았다 • 취학 전 영유아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내가 체벌을 받았다 • 취학 전 영유아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다른 사람이 체벌을 받는 것을 보았다	•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가정에서 내가 체벌을 받았다 •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체벌을 받는 것을 보았다 •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나 학원에서 내가 체벌을 받았다 •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나 학원에서 다른 사람이 체벌을 받는 것을 보았다	

- 훈육을 하다보면 훈육자의 의도는 비록 아동의 인성을 바르게 키우려는 것이라 해도 훈육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아동의 권리를 해치고 아동학대로 변질되기가 쉽다. 무엇이 훈육이고 무엇이 학대인가를 구분하는 일반화된 합의는 없으며,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다양하다. 훈육이 도를 지나쳐 학대로 갈 때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예측불가능성’이다. 성인의 훈육 행동에 일관성이 없으면 아동은 성인의 특정 행동이 언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럴수록 아동은 성인의 행동이 자신을 바른길로 이끌고자 하는 훈육이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괴롭힘, 즉 학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분노 동반’이다. 성인의 훈육 행동이 분노를 나타내는 고성, 일그러진 표정, 거친 몸짓과 함께 표현되면 아동은 이를 훈육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위축시키는 학대 행위로 인식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는 것이다. 성인이 협박, 체벌 등으로 아동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이로써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면 이는 훈육이라기보다는 학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안동현(2014)은 학대와 훈육에 관한 국제아동인권포럼에서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훈육법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긍정적, 지지적, 사랑하는 관계를 수립할 것, 원하는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긍정적 강화전략을 사용할 것, 원치 않는 행동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강화를 제거할 것(가령,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하였다.

2. 학대의 영향과 긍정적 양육문화의 중요성

-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학대의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 질병통제및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학대를 받는 아동은 상처, 골절 등 즉각적인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된다. 만성적으로 학대에 노출되면 향후 다른 폭력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물 남용, 성병 감염, 뇌 발달 지연, 교육성취 감소, 취업기회 제한 등 위험 요소를 추가로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1)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childabuseandneglect/fastfact.html>

- 무엇보다 아동이 반복적으로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이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킨다. 즉, 아동은 학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두뇌에서 불안, 두려움, 공포와 관련된 스트레스 대응시스템을 과하게 가동시키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스트레스 대응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역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닌 상황에도 이 아동은 그것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고 두뇌의 스트레스 대응시스템(체내 호르몬 및 신경화학적 시스템과 연동)을 가동시키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대응시스템은 점차 더 오랫동안 가동되게 된다. 결국 아동의 두뇌에서 스트레스 대응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며, 아동은 이후 발달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대응시스템의 활성화가 지속되면 아동의 학습, 기억, 자기 조절력이 손상된다. 아동기에 양육자와 맺는 관계의 질이 좋으면 이는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양육자와 형성한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낮으면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력은 더욱 감소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 2014).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래 세계 각국에서는 긍정적인 부모역할하기(positive parenting), 즉, '긍정양육'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긍정양육은 자녀의 연령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기대를 할 수 있으며, 자녀와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처벌하기보다는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훈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살펴보기	QR 코드를 연결하여 국내외 긍정양육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세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만든 '긍정양육 129원칙'을 알아보고 자료실에서 더 많은 정보를 살펴보세요
미국 질병통제및예방센터(CDC)에서 안내하는 긍정양육 정보입니다. 아동의 연령별로 부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육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측 마우스로 '한국어 번역'을 설정하여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63조
제1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직장교육을 미 실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75조 (시행령 제26조)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요약 제시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내용: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해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신고의무자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상 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 카목 • 아동복지법상 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 •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파목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하목
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 •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 당해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보호자에 해당된다.
-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거나(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돌보지 않아(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의 복지를 훼손하는 경우 모두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나뉜다.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정서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성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살펴보기	QR 코드를 연결하여 학대유형별 구체적인 예와 아동이 나타내는 신체적, 행동적 징후를 알아보세요
	- 신체학대의 구체적인 행위 예,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정서학대의 구체적인 행위 예,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성학대의 구체적인 행위 예,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방임의 구체적인 행위 예,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장애인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학대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호 - 14호. 형법관련 1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관련 16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1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관련 18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19호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장애인학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개념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노동력의 착취,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재산 관리나 금정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스러울 때,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십시오.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 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분	내용	체크란	
1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예	☐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예	☐ 아니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예	☐ 아니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 예	☐ 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예	☐ 아니오
9	성학대로 의심될만한 질한, 신체적 흔적이 있다.	☐ 예	☐ 아니오
10	성인의 성적 행동을 모방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 예	☐ 아니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예	☐ 아니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 예	☐ 아니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예	☐ 아니오

출처: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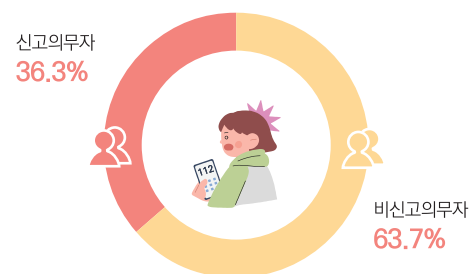
II 아동학대의 신고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 보건복지부의 「2022 아동학대 주요 통계」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46,103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총 44,531건이었다.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것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6,149건(36.3%)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육교직원에 의한 신고는 223건(0.5%)였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28,382건(63.7%)였다.
- 아동학대의심사례 총 44,531건 중 아동학대로 사례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는 27,971건(62.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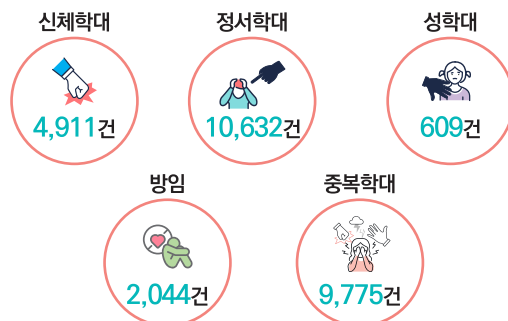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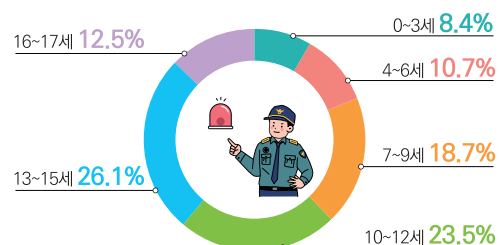
접수 ▶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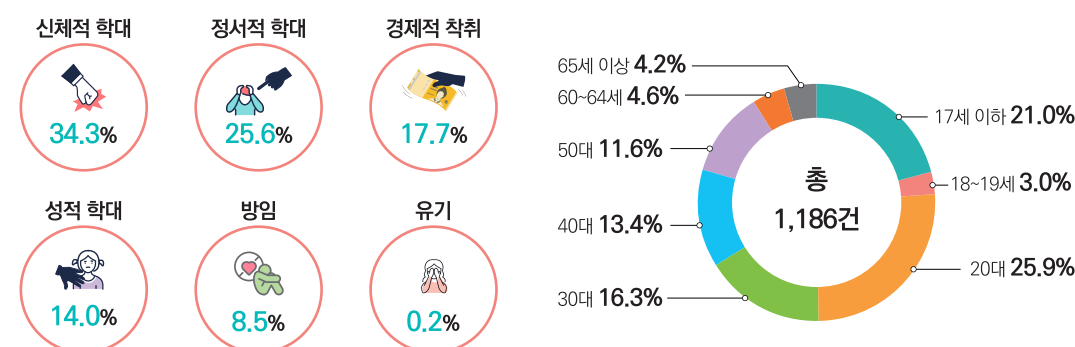
- 아동학대사례 27,971건 중 학대유형을 보면, 중복학대가 9,775건(34.9%), 정서학대가 10,632건(38.0%), 신체학대가 4,911건(17.6%), 방임이 2,044건(7.3%), 성학대가 609건(2.2%)였다. 피해 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0~3세 영아 및 걸음마기 유아가 8.4%, 4~6세 취학전 유아가 10.7%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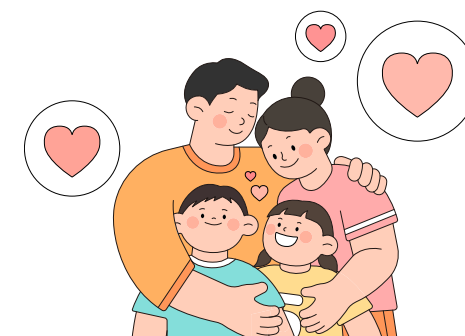
피해아동 연령



-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598건이며 그중 학대의심사례는 2,641건(53.3%), 일반사례는 2,317건(46.7%)이다.
- 학대의심사례 2,641건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186건(44.9%)이다. 중복학대를 미분류한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 34.3%(538건), 정서적 학대 25.6%(401건), 경제적 착취 17.4%(271건), 성적 학대 14.0%(219건), 방임 8.5%(133건), 유기 0.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25.9%(30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7세 이하 21.0%(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 대비 17세 이하(166명)는 50.0%, 20대(287명)는 7.0% 증가하였다.



- 2022년 현재, 전국 총 85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국 총 125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아동에게 숙식뿐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가 설치되어 있다.



2. 아동학대 신고방법

활동	QR 코드를 연결하여 해당 사례를 읽어본 후 다음 사항에 대해 112 전화신고 예시문을 작성해 보세요
	(좌측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만든 상황임) 나는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남아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가끔 아동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음. 아동이 학교에 다닐 나이처럼 신체적으로 발육되어 있었으나 아동에게 물어보니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며, 언어구사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져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에는 어려움. 간혹 2세 경으로 보이는 여동생 손을 잡고 다니는데 여동생의 옷차림이나 발육상황이 지체되어 보임.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하여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도 있다. 아동학대 상담 중 학대 의심 사실이 확인되어 출동이 필요한 경우, 즉시 112에 통보되며 현장출동이 실시된다.

 어디로 신고하나요?	• 국번 없이 112에 신고(전화, 문자) • 시군구 긴급전화 • 아이지킴콜앱 활용 • 장애인학대는 1644-8295(장애인학대 신고번호)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1. 피해(의심)아동의 현재 상황: 피해(의심)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피해(의심) 아동의 심신상태 등 2. 피해(의심)아동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아동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피해(의심) 아동과의 관계, 피해(의심)아동과의 동거여부, 아동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4. 신고자 관련사항: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 피해(의심)아동과의 관계, 신고의무자 여부,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5. 아동학대 의심상황: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6. 기타사항: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아동학대 행위(의심)자의 현재 상황(심신 상태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여부, 기타 내용 ※ 위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신고 예시	112 전화신고 예시 - OO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 OO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의 이유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연락드립니다. ※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가능 - 아동의 현재 상황은 ()입니다.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상황 등

 신고 예시	- 아동의 인적사항은 ()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학대행위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은 ()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등.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 신고자는 ()입니다.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등 ※ 익명으로 신고 가능 112 문자신고 예시 1. 학대피해 의심 아동 정보(추정) 1) 이름 : 2) 성별 : 3) 연령 : 4) 주소(학대발견지 혹은 실거주지) : 2. 학대피해 의심 아동 정보(추정) 3. 학대 의심내용 4. 기타사항
 신고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신고자의 신분은 다음과 같이 보호된다. - 인적사항 기재 생략 -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누구든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됨) - 신분관리카드의 열람 가능 - 증인신문시 영상물 촬영 제출 가능 - 신변 안전 요청 가능 -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출처: 보건복지부·경찰청(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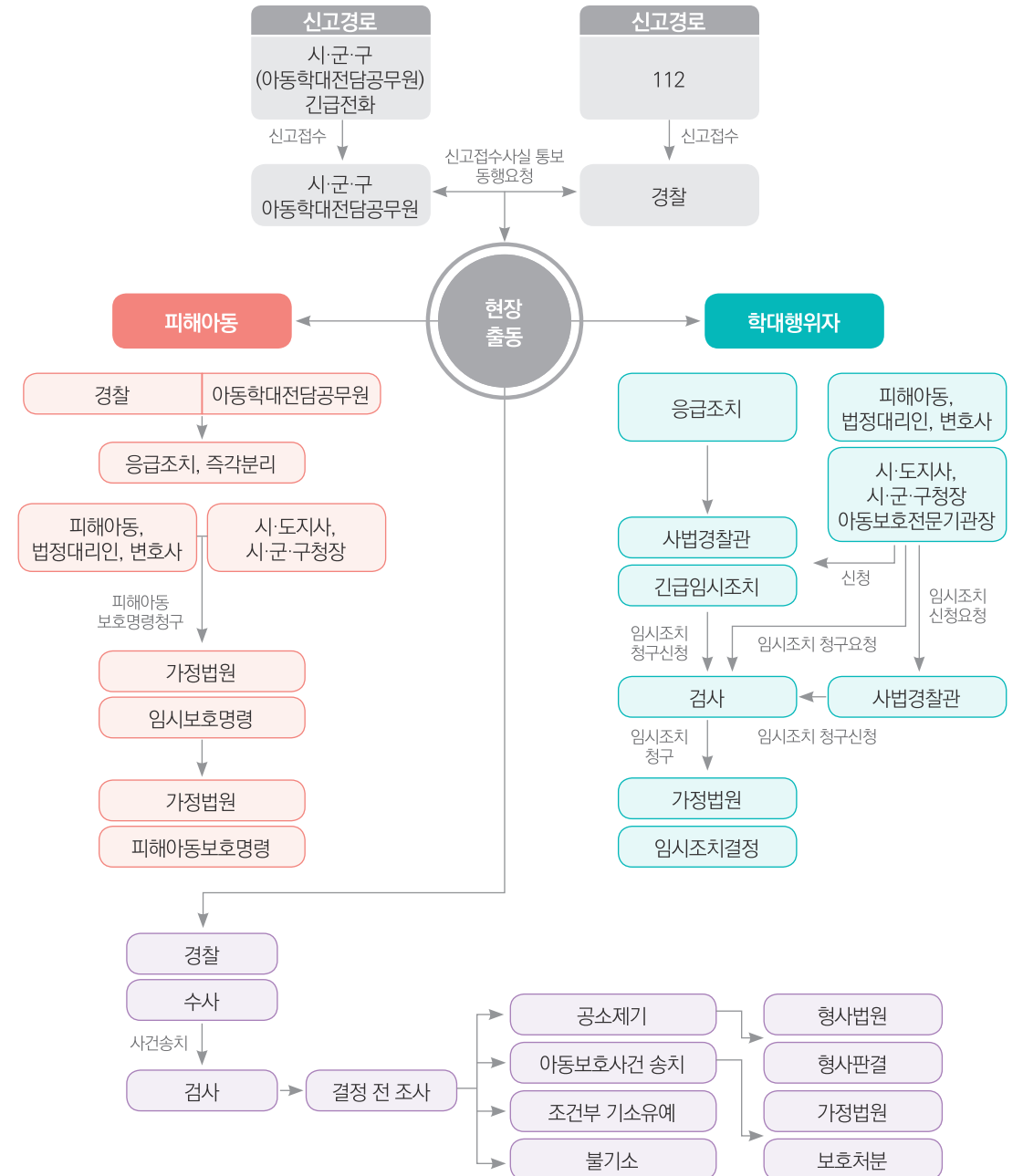
• 아동학대 신고 전후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를 확인한다.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처나 징후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질문하여 설명을 들어본다.
- ✓ 아동학대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한다.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하지 않는다.
- ✓ 피해아동의 안전 및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응급상황 시 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신고한다.
 - 피해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한다.
 - 피해아동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아동에게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신고한다.
- ✓ 신고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본인도 주의한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2항)
 - 따라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방문 시 주변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어도 답변하지 않고, “아동학대가 신고되어 방문했다”고 말한다.
 -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언론인터뷰 요청이 있더라도 독단적으로 응해서는 안 되며, 언론보도로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대응 창구를 원장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
- ✓ 영유아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수사에 협조한다.
 - 영유아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이 직접 상담하지 않고, 전문가가 상담하도록 한다.
 -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

• 아동학대 신고 발생 후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고) 용어에 대한 설명은 인용도서의 85 - 88쪽에 제시된 부록 2. 용어설명을 참조할 것.

출처: 보건복지부(2023).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4.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 보호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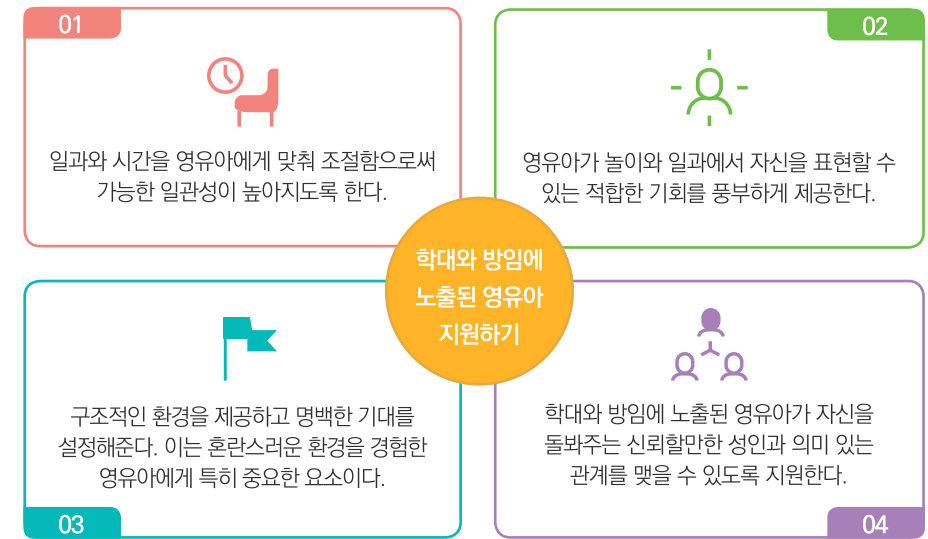
-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영유아의 출결 확인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한다.

어린이집에 결석한 아이, 반드시 사유를 확인합니다!	
매일 확인해야 하는 내용 아동이 어린이집을 결석하는 경우, 부모가 교사에게 유선이나 스마트 알림장 등 대화 방법을 통해 어린이집에 알려야 한다. 교사는 아동 결석 당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결석 사유를 확인한다.	2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2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가정방문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한다. 가정방문 시 보육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방문한다. ※ 가정 방문해야 하는 경우, 각 지역 주민센터(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한다.
명확한 사유 없이 퇴소 신청을 할때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다.	

-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내는 징후는 학대나 방임의 특성, 발생 시기, 지속기간, 강도, 영유아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편이다. 어떤 영유아는 분명하고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영유아는 미세한 행동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특성들은 학대나 방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학대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징후들은 아동과 가족이 지원이나 중재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

- **발달지연:** 영유아기에 일관되고 풍부한 경험이 부족하면 동작, 언어, 사회, 인지 발달의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
- **섭식행동문제:** 심각한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는 음식을 감추거나 모으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 **진정행동:** 어떤 영유아는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긁거나, 상처를 내는 등의 평범하지 않은 진정행동을 보인다.
- **정서 문제:**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문제의 범위는 매우 넓고, 대개는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다. 이 외 어떤 영유아는 성인에게 매우 빨리 애착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안전에 대한 영유아의 기본 욕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부적절한 모델링 행동:** 학대하는 성인을 모방한 행동, 성인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모방 행동을 나타낸다. 영유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것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 **공격성:**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는 또래에게 공격적이거나 잔인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학대나 방임의 결과 이들 영유아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충동 조절이 어려우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 보육교직원은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낼 수 있는 행동 징후를 이해하고, 학대신고 전후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 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가족을 지원하는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은 가정에서 학대위험에 노출되는 영유아에게 일종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일과 경험을 통해 영유아가 세상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회복탄력성이 있으며, 특히 일부 영유아는 학대와 방임의 정도와 무관하게 학대경험과 관련된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해낼 역량을 갖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같이 지원적인 성인의 도움으로 학대에 노출되었거나 노출 위험이 있거나, 학대가 있지는 않아도 가정폭력 등과 같은 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의 영유아가 스스로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영유아를 잘 돌봐주기:** 영유아를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 성적이 아닌 방식으로 안아주고, 달래줄 필요가 있다. 학대경험이 있는 영유아 대부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은 아픔, 고통, 다른 형태의 학대와 관련이 있었다. 영유아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지는 것이 늘 불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 **정서 연령에 따라 영유아를 돌봐주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는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연되어 있기 쉽다. 이들 영유아는 공포를 느끼거나 좌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령에 맞게 행동하지 못한다. 보육교직원은 이들 영유아를 그들의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정서적 연령과 요구에 맞게 이해하고 돌봐줄 필요가 있다.
- **영유아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대화하기:** 보육교직원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에게 부드럽고 일관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영유아는 교사를 신뢰하고 자기의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한다.
- **영유아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신체적인 학대를 경험한 영유아가 또래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깨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방임에 노출된 영유아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따로 숨겨놓을 경우 이 행동이 음식이 박탈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런 행동을 못하게 막을 경우 이는 영유아의 안전감을 위협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교사 자신을 돌보기:**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가외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보육교직원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다면 이들 영유아의 요구에 일관적이고, 예측성 있으며, 풍부하고, 지원적인 돌봄을 해주기 어렵다. 보육교직원도 쉬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PART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일관되게 긍정적 지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전제와 보육교직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I 영유아 권리존중의 Base-line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분석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전제
4. 권리존중 행동지도

II 보육교직원의 역할

1.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
2.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3.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가정과의 협력
4. 민원 및 신고 시 대응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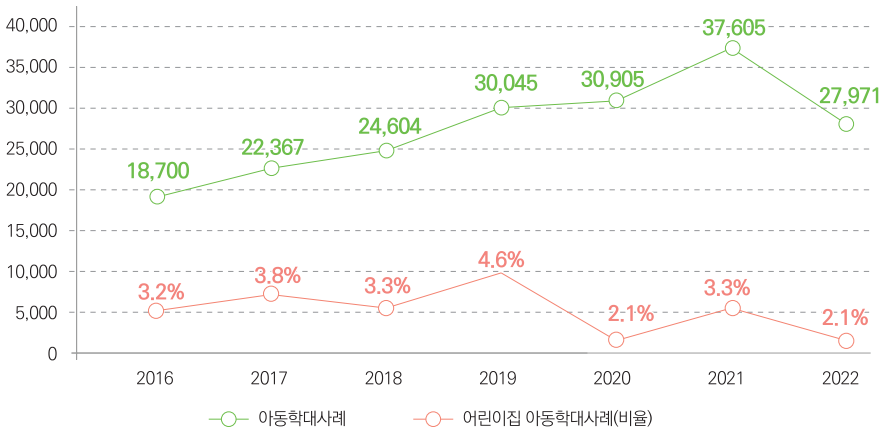
영유아 권리존중의 Base-line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 보건복지부의 「2022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사례 총 27,971건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600건(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7년간 추이에서 감소한 경향이다.

발생년도	아동학대사례 건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사례 건수	비율
2016	18,700	601	(3.2%)
2017	22,367	843	(3.8%)
2018	24,604	811	(3.3%)
2019	30,045	1,371	(4.6%)
2020	30,905	658	(2.1%)
2021	37,605	1,233	(3.3%)
2022	27,971	600	(2.1%)



- 어린이집에서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는 별도 통계를 찾기 어려우나, 뉴스검색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 2021년 2월 15일 제주시의 한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배기 아동이 양 귀에 피멍이 든 채로 귀가했다. 다음날인 16일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노컷뉴스 2022.02.24)
- ○○○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인해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시 관계자는 “장애어린이집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이같은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여수넷통뉴스 2022.02.23)
- ○○시 국공립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장애아동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인천투데이 2022.02.18)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분석

활동	QR 코드를 하나 연결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를 찾아보세요
	•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메뉴 • 상세검색란에 아동학대, 어린이집을 입력하여 검색
	•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 판결 메뉴 • 전국법원 주요판결의 검색란에 아동학대를 입력하여 검색 • 판결 리스트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내용을 선택
	• 케이스노트 플랫폼 상세검색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입력하여 검색

활동	검색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 사례에 대해 옆 사람과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 사건의 기본 개요 • 아동학대로 판결이 된 이유 혹은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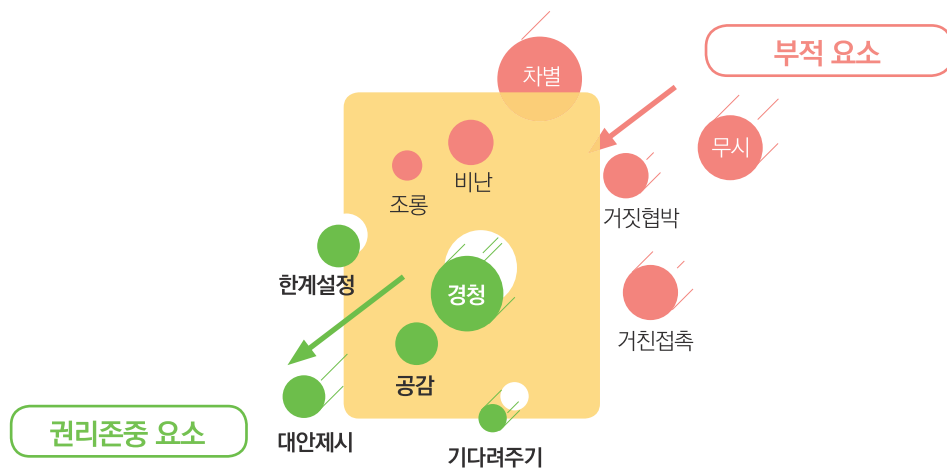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전제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판례를 분석해보면, 무시, 비난, 조롱, 거짓 협박, 차별, 거친 접촉 등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기초 선을 흔드는 부적 요소들이 반복되면서 아동학대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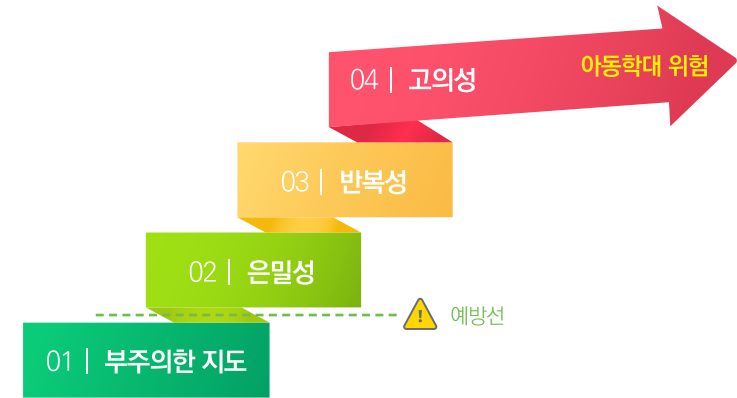
부적 요소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문 中 일부
무시나 방치가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안아달라고 하는 피해 아동의 ...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18.7.12. 선고 2017고단 6311판결)
비난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너 나이가 몇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쉬를 싸냐”며 폭언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1861)
조롱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훈육하겠다며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 세운 후 갑자기... 다른 원생 앞에서 아동의 알몸을 노출시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8.18. 선고 2018고단 736 판결)
거짓 협박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과제를 마무리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103)
차별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교실 구석에 있는 언어영역 책상에서 혼자 먹도록 배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8노484 판결)
거친 접촉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피해아동에게 “미워”라고 소리치며 양 볼을 꼬집어 빨갛게 달아오르게 한 후 피해아동을 바닥에 눕히고 이불을 피해 아동의 머리끝까지 덮어놓아 피해 아동이 두려움에 떨며 울게 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6.5.12. 선고 2015고단1107판결)

출처: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요소 대신 부적 요소가 나타난 상태를 부주의한 지도로 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이 심지어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다.



-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부주의한 지도 행위가 영유아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에 대해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자기경계가 흐려져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은밀성, 반복성, 고의성을 띄면 아동학대 행위로 심화될 위험이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부주의한 지도의 요소가 나타날 때 이를 아동학대 사고의 니어미스라 인식하고, 즉시 보육교직원의 행동이나 업무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권리존중 보육이 일상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니어미스(Near Miss)**란 하마터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을 의미한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종사자가 니어미스를 경험했을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종사자의 행동이나 업무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어린이집에서 불의의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영유아의 안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보육활동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은 니어미스의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관리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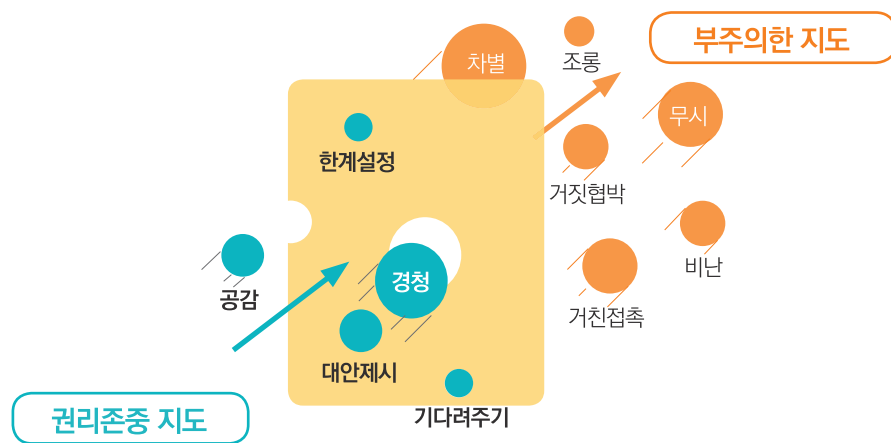


- 어린이집에서는 평소 보육일과를 모니터링 하여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가 행위자 스스로 혹은 주변의 관찰에 의해 탐지되고 중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교사 연수, 보호자와의 협력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부주의한 지도가 아동학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적극 예방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학대 행위 발생 시 그것이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거나 혹은 부주의한 지도였다고 호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권리존중 행동지도

- 영유아에 대한 부주의한 지도 행위를 중재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리는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행동의 부적 요소를 들어내고 대신 그곳에 권리존중의 바람직한 행동 요소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의 요소	보육교직원의 행동에 권리존중 요소가 빠질 때 대신 나타나기 쉬운 요소
✓ 기다려주기 ✓ 영유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구를 경청하기 ✓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에 공감해주기 ✓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한계 설정해주기 ✓ 영유아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 무시 (영아가 계속 칭얼거리며 옷을 잡아당기는데 못 본 척함) ✓ 비난 (실수로 식판을 쏟았는데, “아휴!”하며 혀를 차서 유아가 눈치를 봄) ✓ 조롱 (“잘~한다. 너 자구 그러다가 넘어 질 줄 알았다.”) ✓ 거짓협박 (“교실로 들어가자! 골피지? 너는 혼자 놀아! 우리는 간대!”) ✓ 차별 (“너는 오늘 계속 딴 짓을 했으니, 선생님이 00이만해 줄 거예요.”) ✓ 거친 접촉 (팔을 부주의하게 잡아당김)

II

보육교직원의 역할



1.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

- 하루일과를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의 기초선(Base-line)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주의한 지도의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권리존중의 요소로 바꾸어 상호작용해야 한다. 몇 가지 상황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세) 등원하면서 가져 온 팔찌를 보여주고 싶어 교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이 선생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간식 챙기느라 정리하느라 바쁘잖아!” • “(영아의 팔찌를 뺏어 사물함에 넣고 닫으며) 알았어. 빨리 들어가 앉아. 집에서 물건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	이유	• [무시] 영아의 요구에 대한 경청과 공감 결여 • [거친 접촉] 영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빼앗음 • [비난] 영아의 관심과 행동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반응하여 죄책감 갖게 함
 바람직한 지도	• [공감] “어서와! □□이가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구나? 팔찌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니?” • [한계설정] “선생님도 정말 궁금한데, 지금은 친구들을 맞이해야 하고 간식도 나눠주고 있어. 가방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데 기다려줄래?” • [대안제시] “잠깐만~ 친구들 맞이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간식 먹고 조금 후에 같이 보자 기다려줘서 고마워.”		

- 즉, 교사는 부주의한 지도 대신 경청, 공감, 대안 및 한계 제시하기 등의 긍정적인 영유아 권리존중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복되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행동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5가지 비법으로 아이를 대해 주세요.	경 청하기 공 감하기 한 계설정 대 안제시 기 다리기	영유아가 간혹 반복되는 문제행동을 나타낼 때는 아이를 긍정적으로 지도해 주세요.	• 행동의 패턴과 원인을 살펴보기 •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하기 • 대안 행동을 안내하고 격려해주기
--	---	--	--

활동

QR코드를 연결하여 리플렛과 자료집을 다운받아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업무에 활용해 보세요.

2023.12.15.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영유아도 교사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매일 매일을
권리존중 상호작용으로
채워주세요!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 경.공.한.대.기

경 청하기

영유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구 경청하기
“친구 자동차가 재미있어 보여서 그랬구나~”

공 감하기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에 공감해주기
“친구들이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속상했구나~”

한 계설정

알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한계설정하기
“지금은 낮잠 시간이라 조용하지? 조용해야 친구들이 잠을 잘 수 있단다.”

대 안제시

영유아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안제시하기
“바닥에 있는 놀잇감 중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것만 정리해 볼까?”

기 다리기

영유아의 정서 조절, 한계 수용, 제안 선택을 기다려주기
“친구랑 순서대로 소리를 내니까 멋진 음악이 되었네!”



경공한대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
자료집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교사의 권리존중 지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나 좌절로 인한 아동학대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는 ‘멈추기’를 해야 할 때가 있다. 멈추기는 영유아의 곁에서 머물면서 영유아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 감정 조절하기

- 복식호흡을 10회 하기
- 잠시 창문 밖을 보며 물을 마시기
-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의 긴장을 풀기

▶ 생각하기: 원인과 책임에 대한 즉각적 판단을 유보하고 현재 가능한 해결 지향

▶ 도움 구하기

- 급박한 상황 시 원장과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요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성인은 교사이며, 교사의 정신건강은 영유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교사가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우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 등은 영유아의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교사는 평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속적인 감정부조화로 정신적 소외감, 감정마비, 소진을 경험할 때
- 과도한 업무로 시간 부족을 느낄 때
- 직무상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전문성 부족을 느낄 때
- 업무의 자율성이 부족하여 조정이 불가하다고 느낄 때
- 업무 여건과 환경이 불안정할 때
- 동료와 갈등관계에 있을 때
- 영유아의 보호자가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 점검을 하고 필요 시 도움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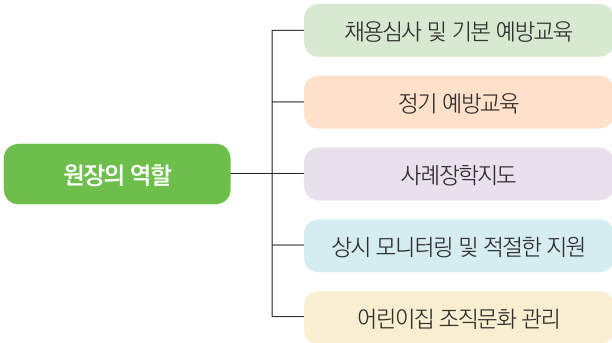
- 한국보육진흥원 마음 성장 프로젝트, 정신적 웰빙상태 검사, 우울감 진단 검사²⁾ 등을 해보고 수치를 확인 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
- 교사 회의나 면담 등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업무 재조정 요청하기
- 취미 생활, 가벼운 산책, 운동, 명상 등 개인적인 충전시간 가지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3).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

2) 해당 검사 문항은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부록 참조.

2.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 어린이집 원장은 **니어미스(Near Miss)** 수준에서의 적극적 중재·관리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채용심사 및 기본 예방교육: 채용 시 면접 및 서류를 통해 지원자의 현장적응 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초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채용 심사시 ‘영유아 이해 및 현장 적응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활용해 보세요.

-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것을 알고 있는가? 영유아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 영유아 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무엇인가요?

-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신체적 상흔, 무단 결석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경우 어떻게 하겠나요?

- 부모가 부주의한 지도에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처 : 어린이집 평가제 매뉴얼(2021)에서 일부 내용 참고

- 정기 예방교육: 원장은 ‘아동학대 관련 법적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보육교직원들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아동학대(의심)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 교육보다는 보육교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보육활동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적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과 방법의 예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교육방법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교육(법적 의무교육, 각 연 1회) -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학대사례 및 발생 원인 -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열람 요청 사유 및 절차 - 어린이집 내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의 중요성과 실제 - 아동권리존중(혹은 부주의한 지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보육교직원의 정신건강 점검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	- 자율장학 - 온라인 교육 - 전문가 초빙 - 외부 교육 참여(지역연합회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교육 등)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				
보육 중에 아래의 부주의한 지도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음	종종 있음	자주 있음
무시	1. 영유아의 요구를 일부러 못들은 척 함 (예: 영아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를 무시)	0	1	2
	2.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관함 (예: 영유아가 산책하다가 넘어져 우는데 교사를 부를 때까지 돕지 않음)	0	1	2
	3.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반 전체에 맞추라고 함 (예: 낮잠 시간에 먼저 일어난 유아에게 일어나지 말고 다시 누우라고 함)	0	1	2
비난	4. 실수 행동의 책임을 영유아에게 돌려 수치심을 갖게 함 (예: “두 눈 똑바로 보고 다니지 않아서 넘어졌지!”)	0	1	2
	5. 문제의 원인을 영유아에게 전가하여 죄책감을 갖게 함 (예: “네가 뭘 잘못 했으니까 안 놀아주지! 친구들이 괜히 그러겠냐?”)	0	1	2
	6. 발달에 부적합한 기대를 하여 영유아의 실수를 추궁함 (예: “이거 누가 흘렸어?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은 친구 누구야?”)	0	1	2
조롱	7. 교사들끼리 영유아의 미성숙을 비웃음 (예: “우리 반 큰 아기, 오늘 또 운대! 선생님 재 왜 또 울어요?”)	0	1	2
	8. 다른 영유아들과 성취와 능력을 비교하며 비하함 (예: “친구들은 혼자 잘 하는데 너는 왜 선생님 올 때까지 안하고 기다리니?”)	0	1	2
	9. 대집단 활동 시 영유아의 행동과 처벌에 대해 토론을 함 (예: “약속 어긴 친구들은 우리 반 아니었으면 좋겠지요?”)	0	1	2

32

33

거짓 협박	10. 기대행동을 안하거나 못하면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함 (예: “놀잇감 가지고 한번 만 더 싸우면 다른 반에 가져다 줄 거야.”)	0	1	2
	11. 서둘러 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걸어 강요함 (예: “열까지 셀 동안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점심 못 먹는다.”)	0	1	2
	12. 영유아 행동 통제를 위해 공포스러운 귀결을 예고함 (예: “낮잠 자야 엄마 오시지? 안자면 엄마 오지 말라고 할 거야.”)	0	1	2
차별	13. 영유아 개인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비호감을 표시함 (예: “선생님! 애 좀 달래 봐요! 애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0	1	2
	14.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며 놀림 (예: “아기처럼 언제까지 기저귀 찰래? 기저귀 찬 친구는 별로야.”)	0	1	2
	15. 발달이 늦은 영유아의 활동 참여 기회를 막음 (예: 현장학습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함)	0	1	2
거친 접촉	16. 영유아가 규범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다소 거칠게 물리력을 행사함 (예: 순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에게 뒤로 가라고 손을 대는데 아이가 밀쳐짐)	0	1	2
	17. 영유아가 사용 중인 사물을 함부로 다루어 불쾌감을 느끼게 함 (예: 낮잠시간에 영유아가 누워 있는 매트를 발로 밟고 밀며 이동시킴)	0	1	2
	18.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함 (예: 뛰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뛰어다녀서 손으로 확 잡음)	0	1	2

- 사례장학지도: 원장은 사례 장학지도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개별성을 이해하고, 일과 상황별로 적절한 지도전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사례 장학은 교사교육이나 회의 시간 등을 활용하며,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전체 교사, 영아반/유아반 교사, 연령별 교사 등으로 집단을 다양하게 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

개별성(영유아 특성 및 기질)에 따른 지도전략 논의_ B어린이집 사례
● 논의점: 교구장에 올라간 00이를 보고 동료교사인 A교사가 “00아~ 여기 올라가고 싶었어!”라며 안아서 내려주었는데 저는 안전과 관련된 행동에서는 영아에게 “높은 교구장에 올라가면 안 돼! 위험해!”라고 제한 행동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예방과 아동존중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까요? ● 우리 어린이집 지도전략 - 각반 경력교사가 위험 행동 여부를 판단 ▶ 담임 간 동일한 기준 정하기 - 안전과 직결된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 “00하면 안 돼!”, “00아 때리면 안 돼!” 등의 제한 행동 먼저 지도할 수 있음, 이후 이유 설명, 공감, 대안 등을 지도함 - 위험한 행동은 연령별, 원아별로 다르게 최소한으로 규정 ▶ 위험한 행동이라 판단해 행동 제한을 많이 할수록 모험 놀이와 탐색 활동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교사의 관리 능력을 올리고 제한 행동은 최소화하기

- 상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지원: 원장은 어린이집의 일과 내에서 정기적, 비정기적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권리존중 상호작용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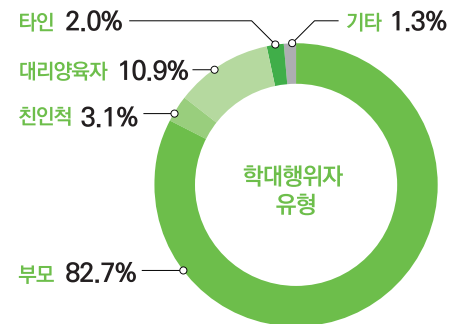
대상	점검 내용	적절한 지원 예시	참고자료
보육교직원 (교사)	권리존중 상호작용	격려와 지원, 모델링 일과운영 시간 조정 개별 면담 통한 지원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
보육환경 및 근무환경	시설설비, 놀잇감 위생, 안전	위험요인 제거 및 청소 필요시 시설 개보수 놀이환경 개선 지원	환경 점검표
	근무시간 교사 대 아동비율	근무시간표 및 일정조정 대체인력 지원	
영유아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여부	보조교사 추가 지원 가정과 긴밀한 소통	보육일지 관찰일지

- 어린이집 조직문화 관리: 조직문화는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규정을 대체하여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판단하고 실천하는데 영향을 준다.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기관의 비전과 가치가 반영된 운영방침 및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육교직원과 공유함으로써 업무수행 절차가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사회의 시간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및 업무처리 과정에 보육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육교직원들의 업무 고충을 함께 논의하고 지원함
- 존중, 배려, 경청 등 정서적 소통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 동기와 조직 내 협업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보육교직원이 스스로 존중받은 경험을 통해 영유아의 인권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과 사례 장학지도, 보육일지 검토 등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필요한 경우 초보 교사와 경력 교사 간 멘토링 관계를 통해 업무수행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원장은 처우나 복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권리존중 상호작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원장은 근무 환경 개선 및 조직문화 관리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가정과의 협력

- 보건복지부의 「2022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사례 총 27,971건 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22,738건(81.3%)였으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총 23,119건(82.7%)였다.



- 가정에서 부모 혹은 보호자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초선(Base-line)을 지키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의 부주의한 지도 사례

무시

“또그만게 뭘 안다 그래.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지마.”
 “(아이가 요구하는 일을 거절하며) 그건 네가 결정할 일 아니야. 엄마, 아빠가 허락해줄 때 해.”

거짓협박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듣고, 울음 안 멈추면 벽보고 서있게 할거야!”
 “(밥 안먹는 아이에게) 밥하고 반찬 골고루 다 먹어야 TV보여 줄거야!”

비난, 조롱

“너 왜 자꾸 밤에 오줌 싸는거야. 00이가 자꾸 오줌싸니까 엄마 힘들잖아.”
 “엄마, 아빠 빨리 회사 가야 해. 너 때문에 회사도, 어린이집도 늦었잖아. 양말 신으라니까, 왜 안 신고 돌아다니는거야!”
 “신발 제대로 신으랬지! 너 거꾸로 신고 다니다 넘어질 줄 알았어.”

차별

“동생도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데, 00이는 왜 혼자 정리 못하는 거야.”
 “너가 형이니깐, 동생한테 장난감 양보하는 거야.”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공식블로그

- 더 나아가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방법을 배워 실행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아동권리보장원 인스타그램

- 영유아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권리존중을 경험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지도방법이 다르면 영유아는 성인의 지도에 어떻게 따라야 할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 영유아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일관되게 긍정적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4. 민원 및 신고 시 대응

-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해 보호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거나 동료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폭력 사안이 전혀 학대와 무관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이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원장은 다음의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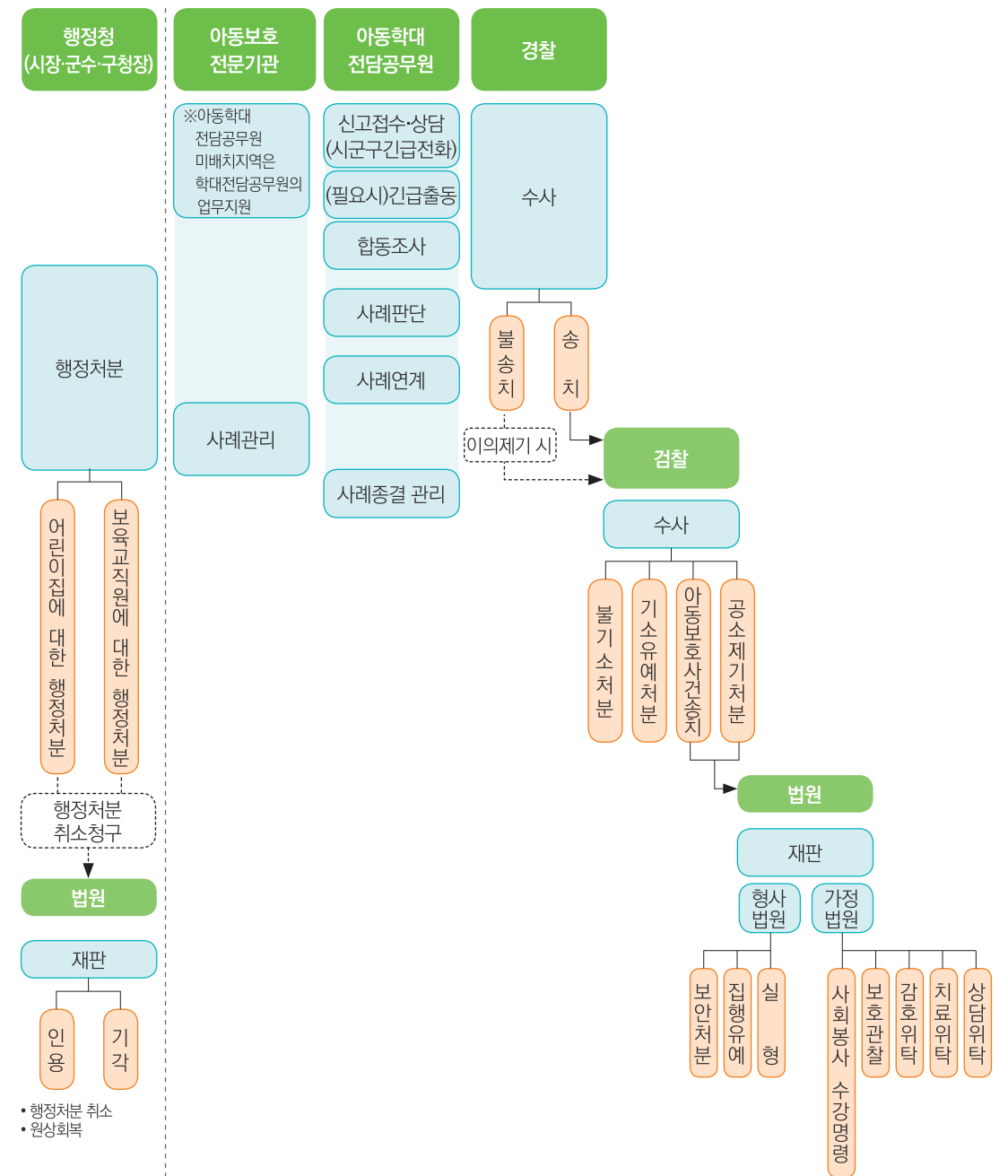
-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 사례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가능한 속히 보호자를 직접 만나 보호자가 제기하는 문제 상황, 보호자의 요구 등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된 보육교직원을 면담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한다.
- 해당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부주의한 지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함께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어린이집에서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노력할 내용이 무엇인지 안내하여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보육행동을 수정하도록 명확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해당 보육교직원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 기록하고 논의하여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행동이 적합하게 바뀌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지침,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 보육교직원에 대한 업무 모니터링 방식을 검토, 보완함으로써 어린이집 전체에서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보육교직원들이 긍정적이고 발달에 적합한 보육행동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다른 보육교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원장은 다음의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한다.

-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내에서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의해 영유아에 대한 부주의한 지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간과하지 말고 즉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보육교직원을 면담하여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부에서 보육교직원 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보고나 논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보여 지지 않는 한, 전체 보육교직원과 논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부주의한 지도를 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된 해당 보육교직원을 면담하여 상황에 대해 묻고 그 보육교직원의 설명과 자기변호를 청취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면담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보육교직원에게 이를 지적하고 자신의 행위를 수정하도록 명확히 요구한다.
-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내에서 동료 보육교직원에게 의해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원장은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사안이 종결된 이후에는 향후 비슷한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요소를 찾아 보육교직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 및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처리 과정



출처: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되었을 경우 원장과 해당 사안에 연루된 보육교직원은 다음의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수사 개시된 사건에 대해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으며,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교직원에게 학대신고 조사절차에 협조하도록 권유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된 영유아, 보호자,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의심)에 대해 고소한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에게 합동조사 실시에 대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등의 조사에 협조하고, 이들이 요청하는 자료 및 관련 서류를 신속히 보여주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언론의 정보요청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다른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언론의 요청과 이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관련 지침에 따르거나 가용 자원이 있을 경우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에게 휴가를 주거나 다른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이들이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 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해당 사안에 연루된 보육교직원은 미리 그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조사 공무원 등과 만나는 과정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며,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한 초기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 해당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건 조사 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사안에 대해 설명한 내용, 사안과 관련이 있는 영유아, 보호자, 다른 보육교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 관련된 정보 기록, 목격자 리스트 등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 보육교직원은 필요 시 해당 사안에 관련이 있는 동료 보육교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되,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나 진술할 내용에 대해 변경, 삭제, 추가 등의 압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해당 사안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건 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모든 내용은 한 부를 복사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사건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한 내용의 경우에는 한 부를 더 복사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한다.
- 본인의 고용상태와 직무 조건을 확인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의 지침에 따라 (무급) 휴가를 가야할 경우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지 등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